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5. 24 선고 2022가단587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곧음

담당변호사 김완수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26.

판 결 선 고 2023. 5. 2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8. 23. 접수 제290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8213호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C은 원고에게 63,137,2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9. 17. 확정되었다.

나. C은 2022. 8. 23.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C의 친동생이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선의 항변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호재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목포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전라남도 목포시

1층 1421.5㎡

2층 1409.7㎡

3층 1409.7㎡

4층 1409.7㎡

5층 1409.7㎡

6층 1409.7㎡

7층 1409.7㎡

8층 1409.7㎡

9층 1409.7㎡

10층 1411.65㎡

지하실 837.39㎡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라남도 목포시 대 6773㎡

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76.19㎡

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6773분의 37.91. 끝.

